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유족에 6~7억 배상

“사회적 영향 중대하고 광범위...예방 필요성 커” 희생자 1인 위자료 2억·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일실수입 등 더해 유족들 평균 총 6~7억원 받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교故(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질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명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애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뉘어진다.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등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삼았다.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었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

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정부 책임 명확해져야 한다” 항소 방침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를 서 승소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항후 재판에서 정부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정부가 일반적으로 과장된 배상 금액을 발표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며 “특히 배상을 신청하면 정부와 화해가 성립돼 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 정부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었고,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었다”며 “정부가 구조 당시 무엇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기무사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최근 태국 북부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사건과 관련해 “자식들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며 마음 졸였을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구조 소식에) 같은 엄마·아빠 입장에서 기뻐다”며 “태국 사람들이 부러운게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며 눈물을 적셨다.

- “정부가 과장된 배상금액 발표...추가 문제제기 불가”
-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의 책임 명시하고 싶었다”
- “기무사 사찰 등 추가 드러난 사실 2심에서 다룰 것”

가족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 직전

해야 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유가족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